

ACI Issue Report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통제를 중심으로

January 2025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통제를 중심으로

ACI Issue Report | January 2025

Contact us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김민규

부대표 (ACI 리더)

T. 02-2112-0428

E. mingyukim@kr.kpmg.com

심정훈

상무 (ACI 부리더)

T. 02-2112-0338

E. jshim@kr.kpmg.com

김다슬

선임연구원

T. 02-2112-3305

E. daseulkim@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와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 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Page

Executive Summary

3

I. 내부회계관리제도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과 도입현황

9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일정

11

내부회계관리제도 내 미비점 분류

12

FY2023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분석

13

II.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16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

17

모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19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21

IT통제 확대 등

23

III. 부정의 발생원인과 자금통제 미비사례

24

부정의 발생원인

24

사례를 통한 자금 프로세스 통제 미비점

25

자금사고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28

IV. 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29

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주요 내용

29

강화된 자금통제 공시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31

V. 별첨

32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의 작성 사례

32

경영진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공시 상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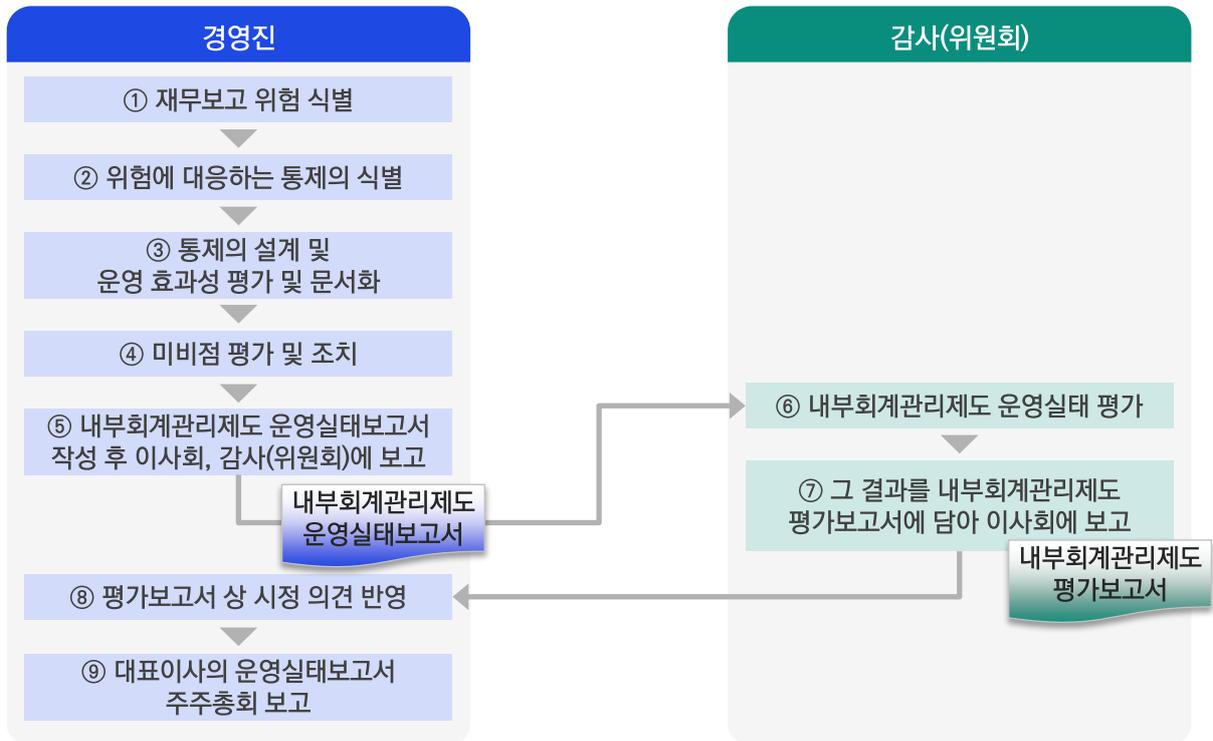
37

Executive Summary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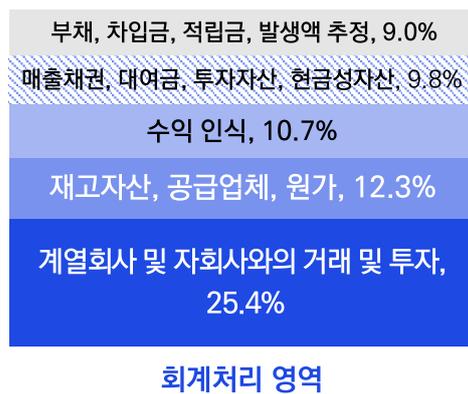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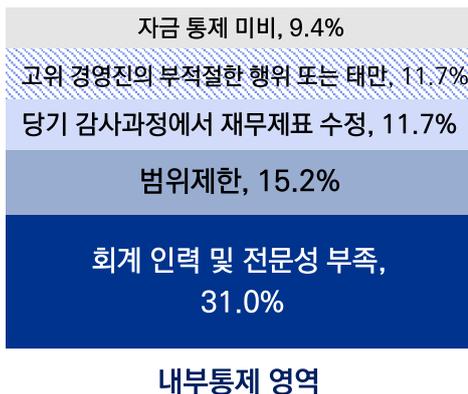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현황

구분	FY2023 비적정기업 수	전체 대상 기업 수	비율
감사	43	1,587	2.7%
검토	47	1,015	4.6%
합계	90	2,602	3.5%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주체별 비적정의견의 불일치 비율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사유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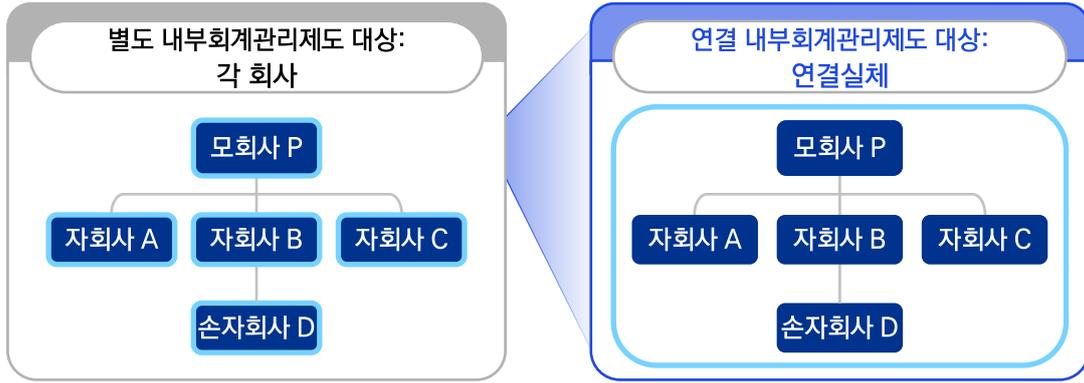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01.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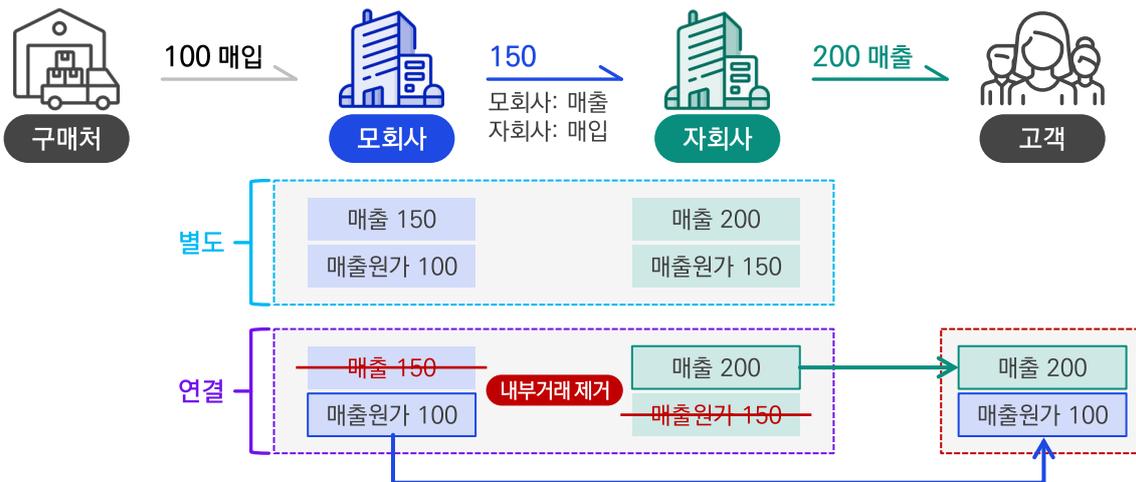
- 연결 재무제표는 모회사 뿐 아니라 자회사 및 손자회사까지 포함되므로 중요성에 따라 각 부문을 대상으로 선정함



02. 모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범위 확대

- 연결 재무제표는 모회사 뿐 아니라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하나의 연결 실체로 보아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단순 합산하고 그 후에 연결 실체 간 내부거래 제거, 미실현손익 제거, 투자와 자본의 상계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연결 결산조정활동에 대한 내부통제도 모회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 예시]



- 모회사는 그룹의 구조 및 운영방식에 따른 전체 운영을 위한 체계수립과 각 부문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윤리경영,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회계정책서 등의 제반 규정과 그룹 차원의 전사적 수준 통제를 의미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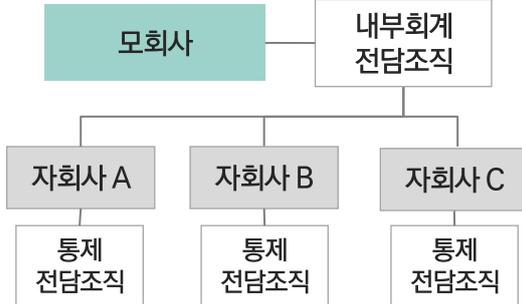
03.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 ✓ 그룹은 그룹전체의 사업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사업 프로세스별로 표준통제 구축여부를 결정한다. 부문은 동일한 통제가 운영된다면 표준통제 절차를 적용하고, 표준통제 절차 적용이 어렵다면 적용가능한 형태로 통제활동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은 연결 실체 내 산업 및 지역의 다양성, 그룹의 운영방식, 부문의 기존 내부통제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부문이 많지 않은 경우 모회사 내부회계 조직 보강을 통하여 대응
 - 각 회사별로 별도의 내부회계조직을 설치
 - 지역별로 일정 규모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 내부 회계조직(regional center)을 통한 운영
- ✓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에 맞춰 자회사(부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수행 결과 및 발견된 미비점 등을 모회사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다.

모회사 내부회계조직으로 관리



개별 부문별 관리



04. IT 통제 확대 등

- ✓ 모회사 차원에서 연결재무제표 결산 프로세스에 IT 의존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IT 통제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 ✓ 부문의 거래수준 프로세스가 평가 대상에 추가되는 경우 IT 의존 항목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시스템의 IT 통제에 대한 평가도 추가로 수행되어야 한다.
- ✓ 그룹 내에서 특정 재무보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서비스조직이 그룹 내부 또는 외부에 존재할 수 있다. 이용자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수행 시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외부서비스조직의 통제 활동도 고려한다.
- ✓ 그룹 경영진은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통제활동을 직접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나,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통제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보고서(Service Organization Control Report, 이하 SOC Report)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부정의 발생원인과 자금통제 미비 사례

부정의 주요 발생원인



- ACFE(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국제부정조사인협회)에 따르면 부정 발생의 주요 원인은 취약한 내부통제, 경영진 검토 부족, 감독인력의 부족이라는 답변이 각각 51%, 18%, 9%로 나왔다.
 - 부정사고의 상당수가 취약한 내부통제, 경영진 검토 부족, 감독인력의 부족에서 발생하므로 부정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와 감독이 필수적임.

자금사고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 이해 상충소지자의 업무분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IT권한과 연계한 업무분장이 필수)
- 거래처 정보에 대한 등록 또는 승인권한이 적절히 분리되어 있는가?
(단독으로 거래처 마스터에 접근하여 계좌 정보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함)
- 중요한 자금통제에 대해서 상급자의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상급자 승인 후에 전표 입력이나 이체 실행이 가능)
- 일별, 월별 및 연중 자금거래에 대한 대사 및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정기적인 회계장부상 잔액과 은행기록과의 대사업무)
- 법인 인감(인감증명서) 등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승인절차가 구비되어 있는가?
(법인 인감 등 실물에 대한 관리 및 관리대장의 사용 등 적절한 통제 절차 구비)

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원칙 (단, 2024년에 한하여 종전 자율규정 적용가능),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
 다만, 그 중 경영진 운영실태보고서에 첨부되는 자금 내부통제 공시서식 대상 및 의무 적용시기는 하기와 같음

구분	내부회계 감사대상 회사	내부회계 검토대상 회사
상장회사	자산 1천억 원 이상 (2025년 적용)	자산 1천억 원 미만 (2026년 적용)
비상장회사	N/A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타 대형 비상장회사 (2026년 적용) 금융회사 (2025년 적용)

☑ 주요 내용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 →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감사(위원회) → 이사회]
1)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2) ICFR 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내역 3) 자금위험 부정에 대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이하 자금 통제 공시 서식) 등 추가	1)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내역 2) 자금관련 부정위험 관련 외부감사인과의 소통내역 등 추가 3) 평가보고서의 수신인을 이사회로 한정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자금통제공시서식 예시

구분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전사적 수준 통제	부정 방지 제도 운영 등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자금통제	계좌 등록/변경, 법인인감, OTP 사용통제 등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기타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검토 등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 감사(위원회)의 자금관련 부정 위험 관련 경영진, 외부감사인과의 소통내역 추가 예시

구분	일자	참석자	주요 논의내용
경영진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등)	20XX.XX.XX	내부회계관리자 등	~~~~~
외부감사인	20XX.XX.XX	외부감사인 등	~~~~~

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 新 평가·보고 기준의 감사(위원회) 평가 항목 신설

가. 평가기간의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신설항목

나. 회사의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작성·공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운영되는지 평가

다.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라.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의 적정성 확인

마.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확인

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 강화된 자금통제 공시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01

경영진은 전사적 수준에서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고려하여 공시하고 있는가?
(부정방지 프로그램/부정위험 평가/업무 분장/상시 모니터링 등)



02

경영진은 자금 관련 부정위험과 직결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통제 활동을 충분히 공시하고 있는가?



03

경영진은 통제별로 통제 수행자, 통제 속성(대사검토, 승인 등), 통제평가자와 평가 시기를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는가?



04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은 적절한 시정조치와 미비점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보고하고 있는가?



05

경영진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와 동일하게 자금관련 부정위험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충분히 공시하고 있는가?



I.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과 도입현황

-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CFR)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 및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하며 기존에는 재무제표 작성 결과만 감사했다면 이제 재무보고 과정까지 확대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 등 다른 목적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그 또한 범위에 포함된다¹⁾.
- 한국의 상장/비상장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와 개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검토 여부는 다음과 같다.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든 상장사에 도입되었으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시기는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23년, 5천억원 이상 29년, 그 외는 30년부터 적용된다.

[상장여부, 자산규모, 개별·연결 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수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개별기준 K-SOX	연결기준 K-SOX
상장회사	2조원 이상	감사	감사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감사	-
	1천억원 미만	검토	-
비상장회사	5천억원 이상	검토	-

신규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바로 부담해야 하는가?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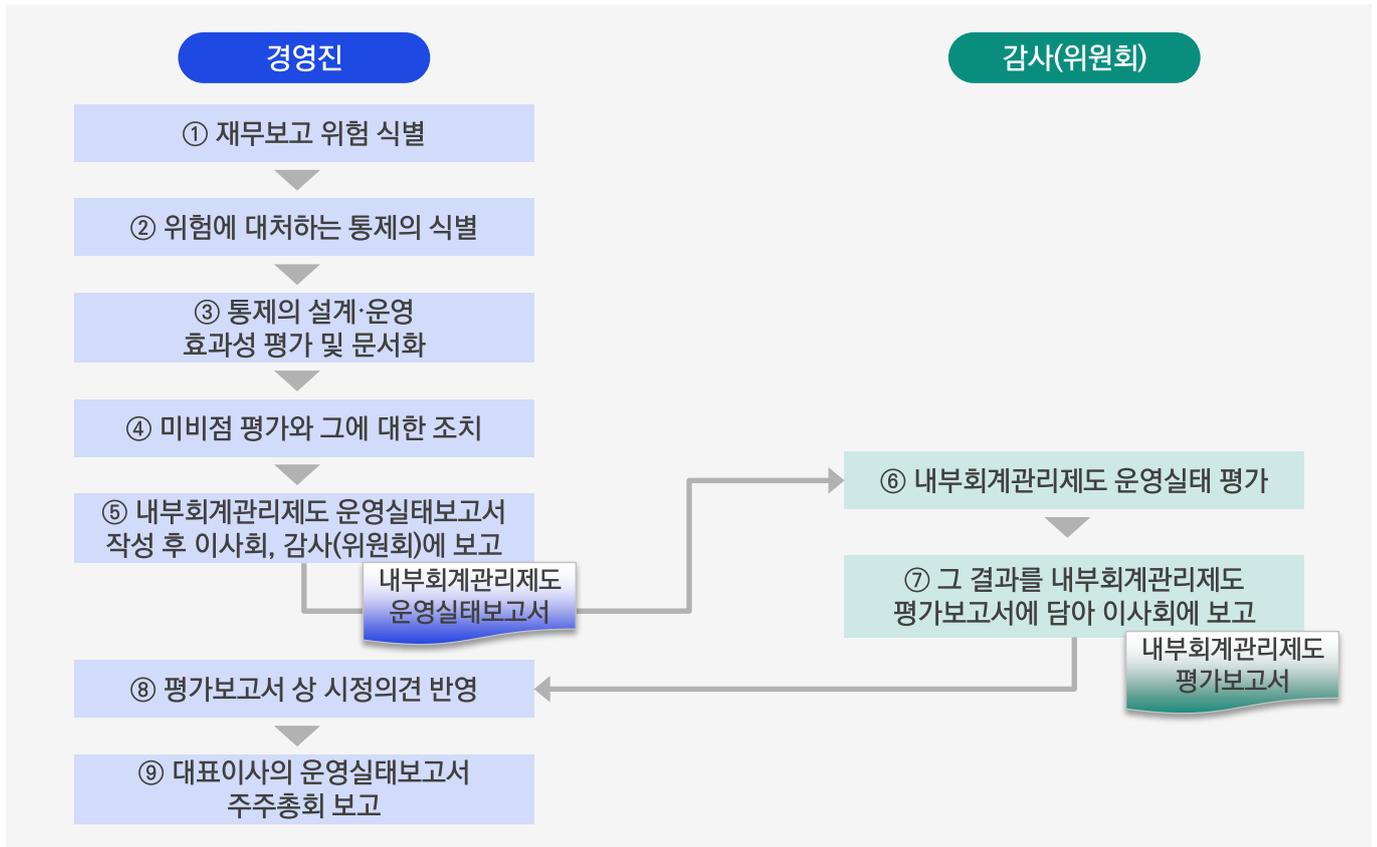
- 현행 규정 상으로 상장하는 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하는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적용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12
 2) 6월 12일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안방안」 제고개선 진행상황, 금융감독원, 2023.12.13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실태보고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세는 하기와 같다.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프로세스³⁾]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의 업무를 포함하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인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⁴⁾.

- 평가기간의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운영실태보고서에 모든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확인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의 적정성 확인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 운영실태보고서상 기타 항목의 적정성 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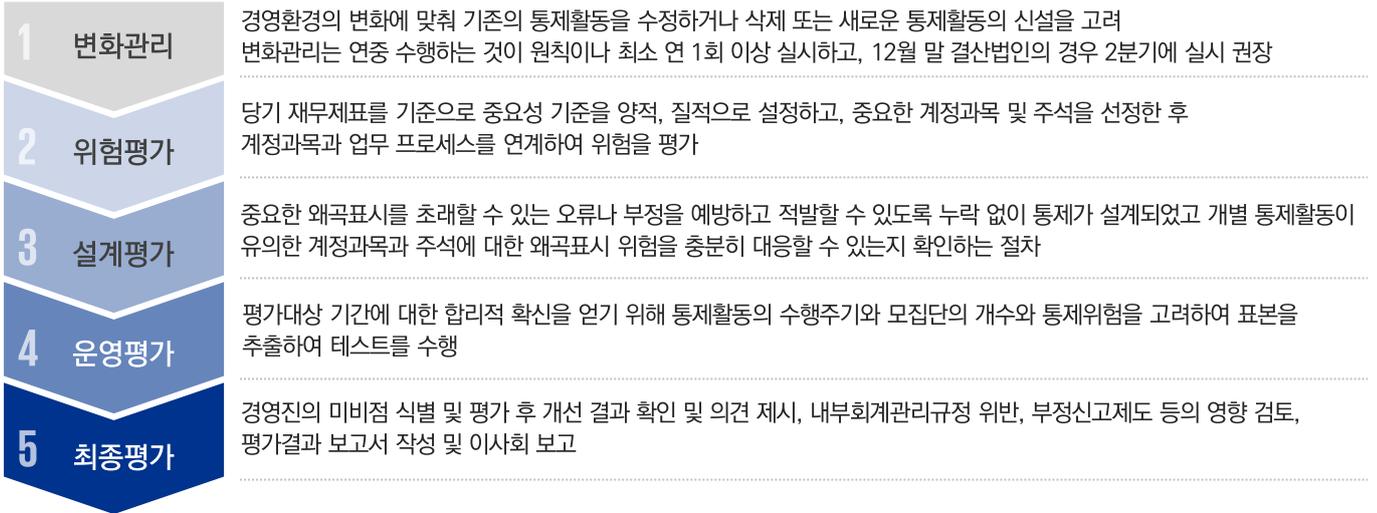
3) (보도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2023.11.15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95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일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의 5단계와 회사와 감사(위원회)별 분기별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업무 단계와 흐름의 속지는 감사(위원회)의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의 5단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사와 감사(위원회)의 분기별 업무 흐름 예시]

	Q2	Q3	Q4	Q1
변화관리	내·외부 변화 식별 및 분석 변화관리 검토			회사 ● 감사(위원회)
위험평가	위험 및 범위선정 위험 및 범위선정 검토			
설계평가		통제활동 설계평가 설계평가 검토		
운영평가		1차 운영평가	미비점 개선 조치 1차 운영평가 검토	2차 운영평가 2차 운영평가 검토 기말평가
최종평가				운영실태 평가 독립적 평가 주총보고 이사회 보고
외부감사인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Illustr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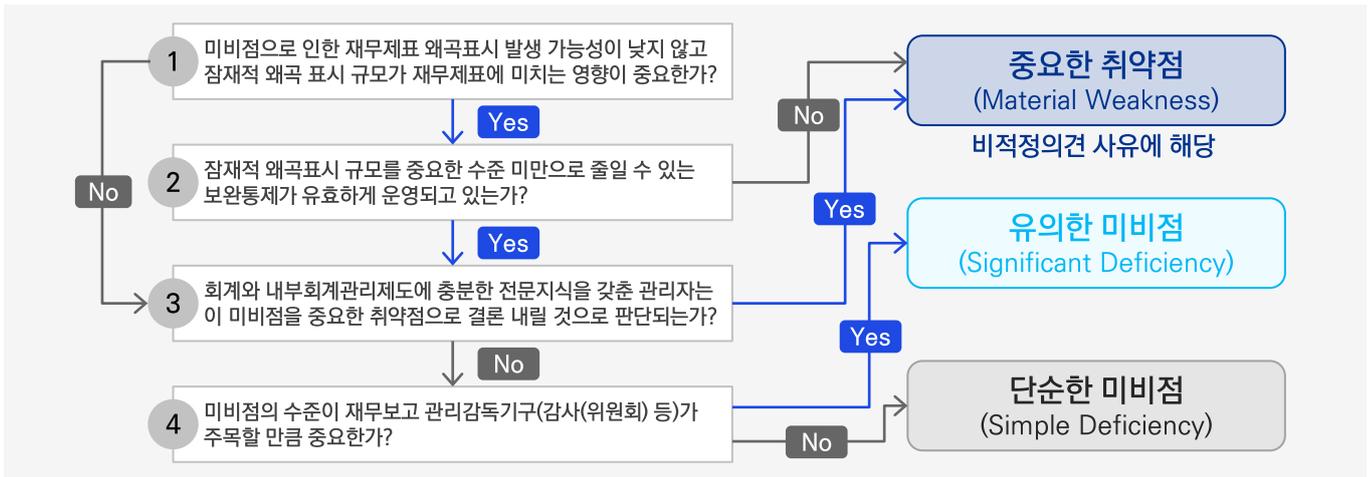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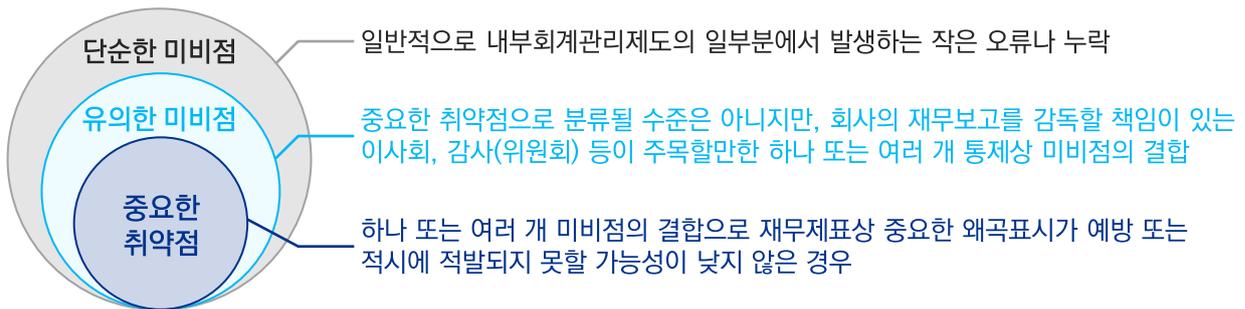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전체적인 일정에 대한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의 보고를 감사(위원회)가 수령하고 있는가?

4. 내부회계관리제도 내 미비점 분류

- 내부회계의 미비점은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 및 금액적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 유의한 미비점, 단순한 미비점 세가지로 구분된다.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비적정 의견의 사유가 된다.

[내부회계 미비점의 종류⁵⁾ 및 판단 흐름⁶⁾]



-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평가하여야 한다.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미비점의 예시⁷⁾]

- 금액이 중요하지와 관계없이 고위 경영진에 의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 중요한 왜곡표시의 수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당기 수정사항으로서, 회사가 제시한 최초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파악된 경우(최종 재무제표에 동 수정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는 관계 없음)
- 회사의 외부 재무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 합리적인 근거 없이 외부감사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준수되지 않은 경우

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 문단16
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146
7)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 문단83

5. FY2023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분석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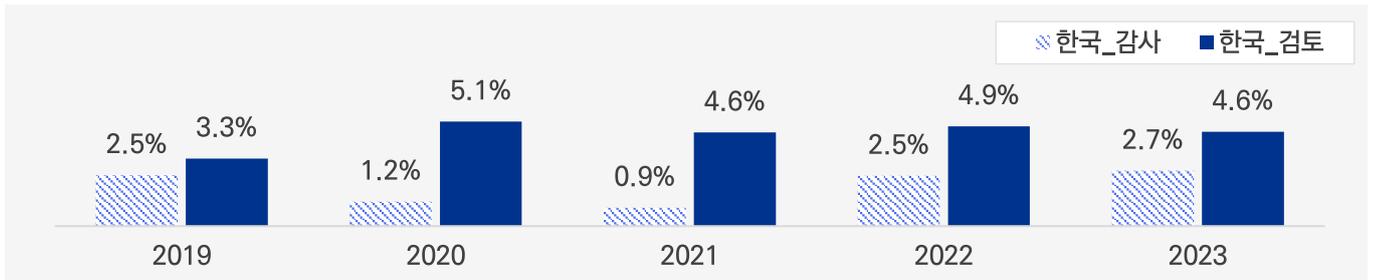
1) 조사대상

-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시장, 감사/검토별 분석 상세는 다음과 같다.

[FY2023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기업 분석]

국가	비적정 의견 기업			FY2023 비적정기업 수	전체 대상 기업 수	비율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한국_감사	19	24	0	43	1,587	2.7%
한국_검토	3	34	10	47	1,015	4.6%
합계	22	58	10	90	2,60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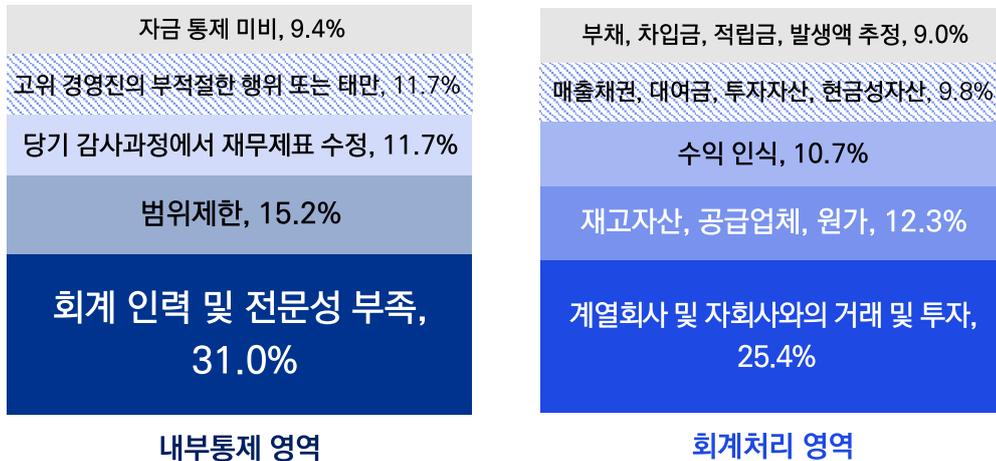
[FY2019-2023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비율 추이]



2) 비적정의견 사유 분석

-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90개사는 통상적으로 복수의 사유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영역과 회계처리 영역으로 분류한 상세는 다음과 같다.

[FY2023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사유 영역별 분석]



8) 삼정KPMG ACI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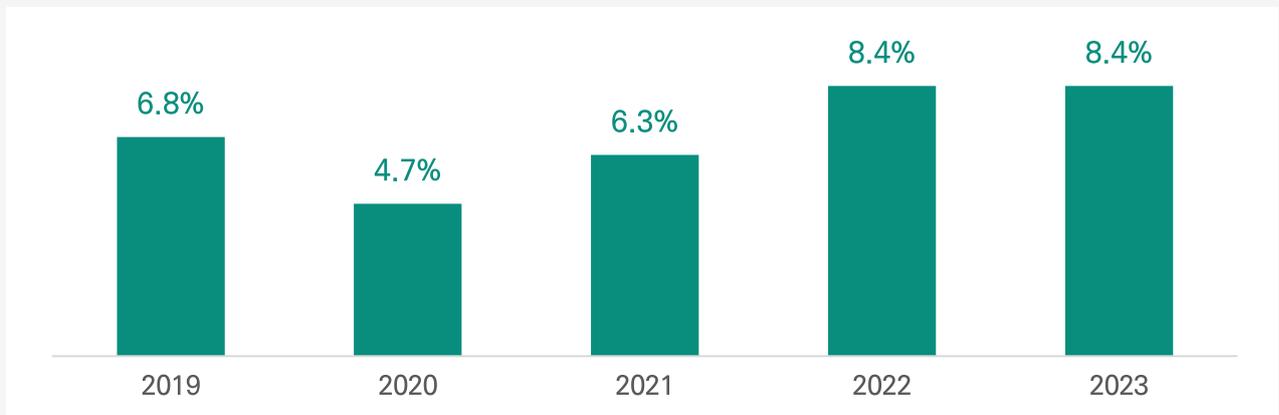


미국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분석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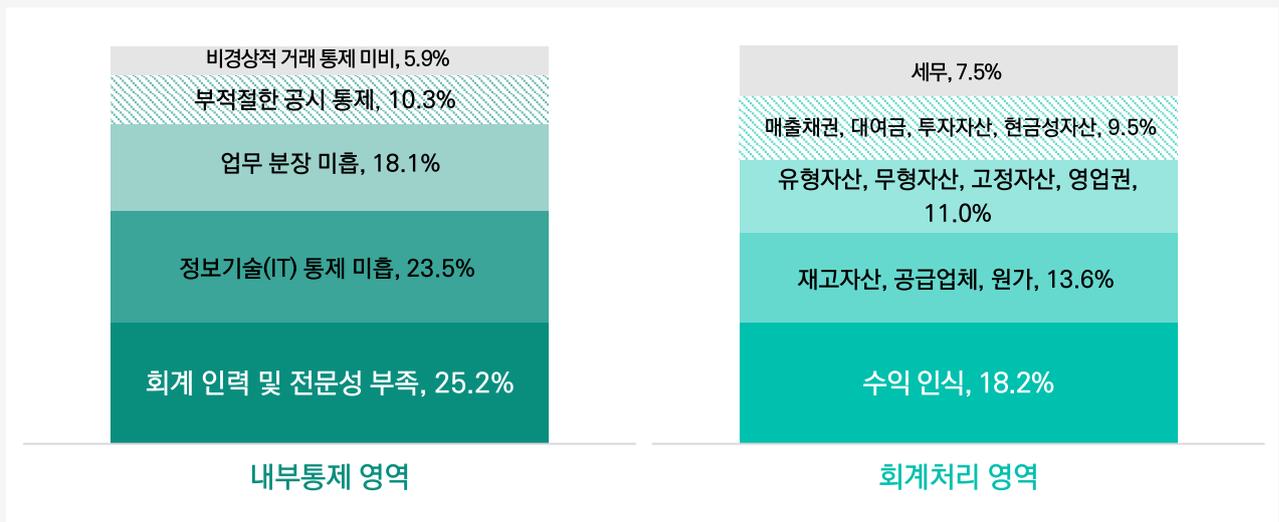
[FY2023 미국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기업 분석]

국가	FY2023 비적정기업 수	전체 대상 기업 수	비율
미국_감사	282	3,348	8.4%

[FY2019-2023 미국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비율 추이]



[FY2023 미국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사유 영역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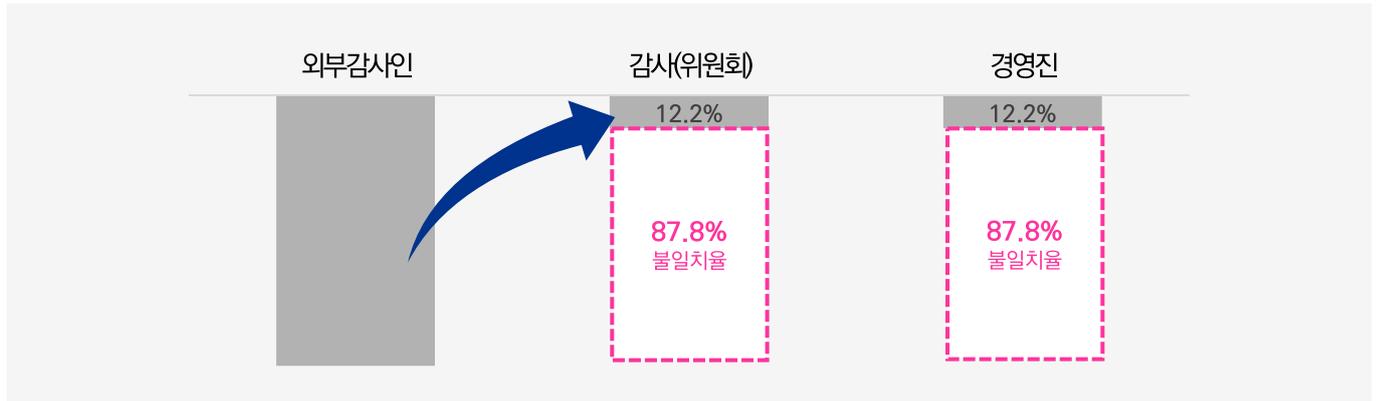


9) Audit Analytics

3)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불일치건 분석

-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기업 중에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도 동일하게 비적정의견을 밝힌 비율이 12.2%(11건)에 불과하였다¹⁰⁾.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주체별 비적정의견 불일치 비율]



- 이는 우리나라 기업 내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형식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리가 요구되며 하기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 경영진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실질적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직속형태의 독립적인 지원조직 필요
 - 외부감사인-감사(위원회)-경영진 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업 내 정보 공유 활성화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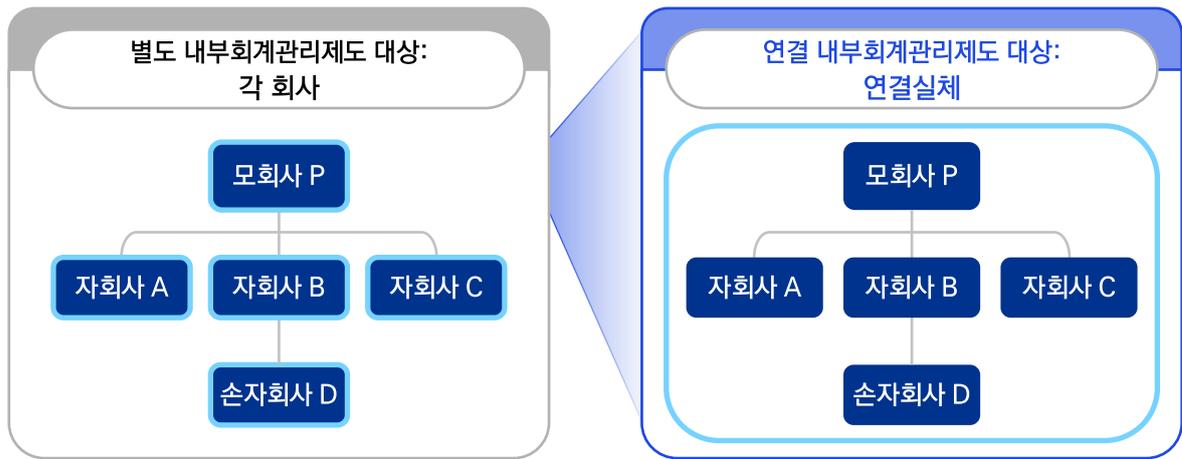
- 외부감사인-감사(위원회)-경영진 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고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있는가?

10) 미국에서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중에 경영진도 동일하게 비적정 의견을 밝힌 비율이 99.7%이었다.

II.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연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되도록 설계 및 운영되는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연결 재무제표는 모회사 뿐 아니라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하나의 연결 실체로 보아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단순 합산하고 그 후에 연결 실체 간 내부거래(ex. 모·자회사간 매출·매입거래 등)를 제거한다.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비교 시 차이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p>01.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p> <p>회사가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해 양적·질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부문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p>
	<p>02. 모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p> <p>모·자회사를 하나의 연결실체로 인식하기 위한 연결결산 관련 통제와 연결실체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룹차원의 통제를 구축 및 운영</p>
	<p>03.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p> <p>자회사의 통제 구축 및 평가가 포함되며 이를 위한 내부회계관리 조직 구성 필요 자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설계 및 운영평가 결과가 발견된 미비점은 모회사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p>
	<p>04. IT 통제 확대 등</p> <p>연결 결산 관련 IT 의존 항목,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Global Single Instance), 자회사 거래수준 프로세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범위 선정, 외부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보고서 활용</p>



1)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Scoping)은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해 양적·질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보고 대상 부문¹¹⁾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 평가·보고 대상범위는 유의적인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과 그 예시¹²⁾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양적 기준 예시	질적 기준 예시
유의적 부문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매출 등 주요 지표의 15% 초과	부정위험이 높은 부문 등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특정 위험을 포함하는 부문	중요성 금액의 4배	그룹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은 부문 등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부문	중요성 금액의 8배	부문의 중요 왜곡표시위험 수준 등
	개별적으로 또는 합쳤을 때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remote) 부문	상기 외	상기 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 선정 예시]

Illustrative

구분	모회사P	자회사A	자회사B	자회사C	손자회사D
	생산/판매	생산/판매	판매	생산	기타
Scope 분류	Full	Full	Specific	Limited	Limited
전사통제	✓	✓	✓	-	-
IT 일반통제	✓	✓	✓	✓	-
매출	✓	✓	✓	-	-
구매, 생산, 재고	✓	✓	-	✓	-
유·무형자산	✓	✓	-	-	-
인건비	✓	✓	-	-	-
자금	✓	✓	✓	-	-
재무보고	✓	✓	✓	-	-

11) 부문(Component)이란 감사기준서 600에 따르면 그룹경영진 또는 부문경영진이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대상인 실체 또는 사업활동이며 주로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자회사를 의미한다.
 12) 상세는 금융감독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 가이드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외부감사인의 위험평가는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이므로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위험평가 결과는 동일해야 한다.



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선정 결과가 외부감사인과 차이가 난다면¹³⁾

-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 감사범위와 동일하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를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현실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될 소지가 있다.
 - ① 회사의 범위선정(Scoping) 절차에 미비점을 시사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선정하지 않은 부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나 외부감사에서 미비점이 식별될 수 있다.
-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에 전달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보고를 수행해야 한다.
-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 범위 선정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회사가 선정하지 않은 부분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재무제표 세부테스트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테스트 수행 부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¹⁴⁾

- 위험평가 결과에 대응하여 회사가 갖추고 있는 통제의 수준과 감사인이 수행하는 실증절차의 수행 단위가 달라서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부문과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부문이 최종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는 그룹(또는 하위그룹) 수준에서 운영되는 통제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룹 수준에서 운영되는 통제를 테스트하였으나,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통제를 고려하여도 추가 실증절차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부문에서 세부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 회사의 Scoping 결과는 경영진(내부회계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였는가?
-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 선정(Scoping) 결과가 일치하는가?
- 불일치한다면, 회사는 선정하지 않았지만 외부감사인은 선정한 부분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가?

1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2024.10)」, 74번, 한국공인회계사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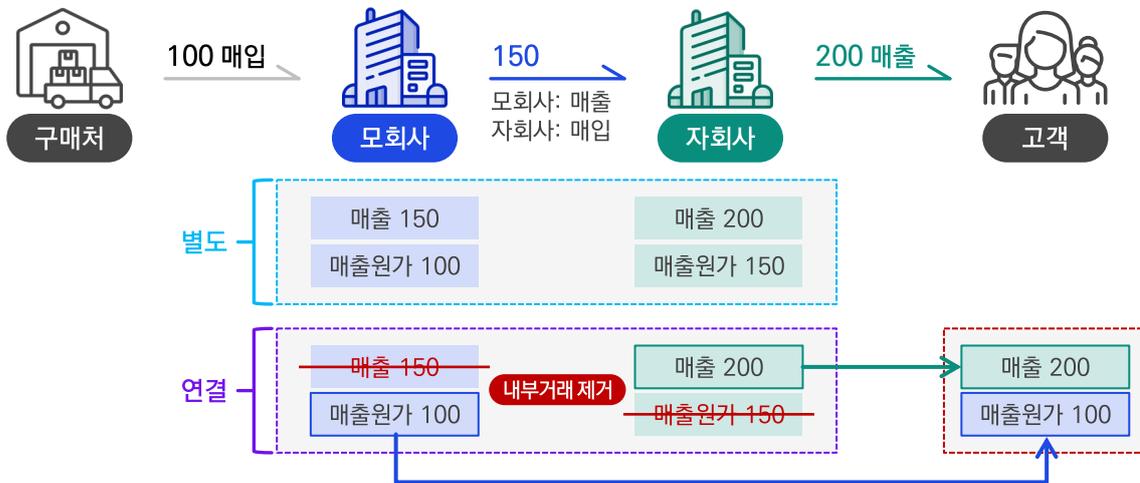
1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2024.10)」, 65번, 한국공인회계사회 참고



2) 모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① 내부거래 제거

- 연결 재무제표는 모·자회사를 하나의 연결실체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내역을 제거해야 한다.
- 만약 모회사가 상품을 100에 구매처로부터 매입해서 150에 자회사에 매출을 한 후 자회사가 200으로 외부 고객에게 매출을 한 상황을 가정한다.
 - 이 때, 모·자회사는 한 회사로 인식(연결실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에서 인식되어야 하는 거래는 오직 외부의 구매처로부터 100에 매입해서 외부 고객에게 200에 판매한 거래이며 모·자회사간 내부의 거래(150 매출·매입)는 제거되어야 한다.



-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회계처리에는 미실현손익 제거, 투자와 자본상계 등이 있으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이러한 회계처리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 통제 프로세스에 대한 예시로 부문 재무정보를 취합하고 모·자회사 간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와 내부거래 제거 등 연결 결산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검토 및 승인하는 절차 등이 있다.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 내부거래 제거 등 연결결산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 통제가 있는가?
- 부문 재무정보를 취합하고 모·자회사 간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통제가 있는가?



② 그룹차원의 통제 (Group Level Control)¹⁵⁾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회사는 그룹차원의 통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윤리경영,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회계정책서 등의 제반 규정과 그룹 차원의 전사적 수준 통제를 포함한다.
- 그룹차원의 통제는 그룹의 구조 및 운영방식에 영향을 받으며 전체 운영을 위한 체계수립과 각 부문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연결 실체 내 모든 부문에 대한 거래수준 통제절차를 구축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룹차원의 통제를 통하여 구축 및 평가를 하지 못하는 잔여 부문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그룹차원의 통제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종류	설명
중앙정보기술시스템 통제	그룹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는 공통의 일반정보기술통제(ITGC)에 의해 통제되는 중앙정보기술시스템과 그에 대한 통제활동
그룹차원의 일관된 매뉴얼 및 절차	그룹 재무보고 절차에 대한 매뉴얼(회계정책서, 회계처리 지침) 등 일관된 절차
위험평가 절차	그룹 경영진의 위험평가 절차, 즉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위험(부정위험 포함)을 식별, 분석, 관리하는 절차
모니터링 절차	부문에서 제공받은 재무정보의 적시성을 모니터링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부정예방체계 강화	자회사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윤리규정, 부정신고제도나 부정예방 프로그램을 그룹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담당
자회사 포함 전반적 내부감사체계 마련	내부감사기능 및 자체평가 프로그램의 활동 등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 모회사가 그룹 차원의 정책서 및 실무지침서, 회계처리 사례 등 연결결산 정책수립 및 실무지침 가이드를 작성 및 배포하는가?

15)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p17~1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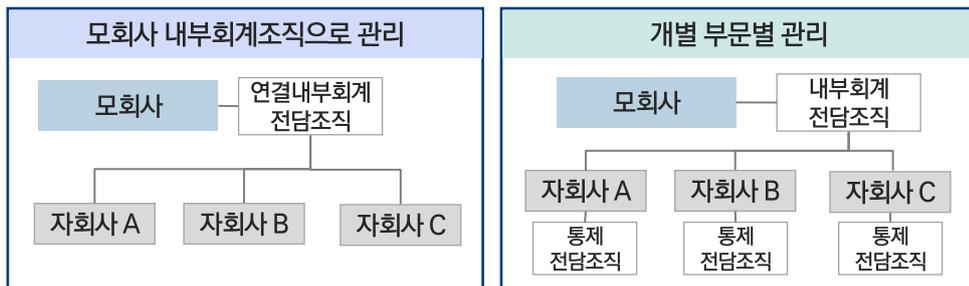


3)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에 맞춰 자회사(부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검토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모회사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회사에서의 미비점 발생 시, 이와 동일한 통제를 연결 실체 차원에서 재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자회사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그룹차원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낮지 않다면 연결실체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낮다면 유의한 또는 단순한 미비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한편, 다수의 자회사에서의 유의한 미비점들이 결합된 후 그룹차원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낮지 않다면 연결 실체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낮다면 유의한 미비점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그룹은 그룹 전체의 사업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사업 프로세스별로 표준통제 구축여부를 결정한다. 부문은 그룹 내 표준통제가 수립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해당 표준통제와 동일한 통제를 부문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동일한 통제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룹에서 구축한 표준통제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
 - 그룹이 구축한 표준통제를 부문이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문에서 적용가능한 형태로 통제활동을 조정하여 구축을 수행한다.
 - 그룹의 표준통제가 수립되지 않은 개별 사업을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를 구축한다.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은 연결 실체 내 산업 및 지역의 다양성, 그룹의 운영방식, 부문의 기존 내부통제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하여 모회사가 도입 준비단계에서부터 해당 그룹에 적합한 조직 체계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표적으로 3가지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¹⁶⁾.
 - 부문이 많지 않은 경우 모회사 내부회계 조직 보강을 통하여 대응
 - 각 회사별로 별도의 내부회계조직을 설치
 - 지역별로 일정 규모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 내부 회계조직(regional center)을 통한 운영
-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에 맞춰 자회사(부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미비점 등이 모회사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16)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p2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①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

② 모회사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③ 자회사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④ IT 통제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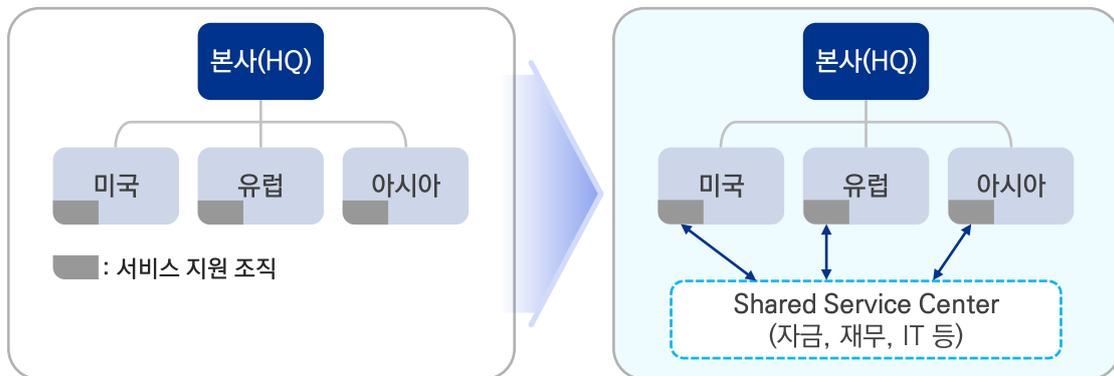
① 자회사 내부회계전담조직의 역할

- 연결 전사수준통제 적용 내역 점검 및 평가
- 거래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 및 보고(모회사 지침에 따른 평가 범위 및 평가 기준 준수)
- 미비점 식별 시 모회사에 대한 보고 및 개선조치 이행
- 부문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검
- 변화 및 이슈사항을 모회사에 보고 등

②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¹⁷⁾

▪ 다수의 부문이 존재하는 그룹의 운영 형태 중 공유서비스센터는 그룹내 부문별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원 부문의 유사 기능 및 서비스(예, 자금, 재무, IT 등)를 모아 그룹의 특정 부문에서 해당 기능을 집중화하여 처리한다. 그룹 내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에서 수행하는 통제활동과 같이 중앙집중화된 통제가 존재한다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공유서비스센터는 통상 인건비 등 발생 비용을 그룹내 관계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중요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나,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 다수의 부문에 귀속되는 대량 거래를 정해진 규칙에 의해 처리하고 예외사항 발생 시 정해진 규칙과 보고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실행되는 정책과 절차를 적용하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와 통제활동 등을 운영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 경영진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는가?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개선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회사 내에서 이용 중인 공유서비스센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와 통제활동들이 있는지 검토되고 있는가?

17)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p2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4) IT통제 확대 등¹⁸⁾

① 모회사 및 자회사의 IT 통제 확대

- 모회사 차원에서 연결재무제표 결산 프로세스에 IT 의존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IT 응용통제와 일반통제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회사는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IT통제의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부문의 거래수준 프로세스가 평가 대상에 추가되는 경우 IT 의존 항목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시스템의 IT 통제에 대한 평가도 추가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문에 대한 scoping이 완료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IT시스템에 대한 scoping도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 그룹차원에서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Global Single Instance, 이하 GSI)기반의 IT시스템 구축은 전 세계적으로 IT 시스템을 물리적·논리적으로 통합한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모회사 또는 특정 계열회사의 IT 조직이 그룹차원의 IT 통제를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외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인증보고서(Service Organization Control Report, SOC Report)

- 그룹 내에서 특정 재무보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서비스조직이 그룹 내부 또는 외부에 존재할 수 있다. 이용자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수행 시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외부서비스조직의 통제 활동도 고려한다.
- 그룹 경영진은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대상 여부를 식별된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통제활동을 직접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나, 물리적 및 시간상 제약이 많으므로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통제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보고서(Service Organization Control Report, 이하 SOC report)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SOC Report 대상이 될 외부서비스제공자의 인증 대상 업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외부서비스제공자	인증대상 업무	회사의 관련 재무프로세스
신용평가기관	채권 및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가치 평가
펀드 서비스회사	펀드의 기준가격 평가	금융자산 가치 평가
HR 서비스회사	인사정보 관리, 급여/상여/수당 계산 및 관련 부채 평가	인건비 계상 및 급여 관련부채 측정
IT 서비스회사	프로그램 변경, 운영 등 IT지원 업무	구매, 생산, 회계/자금 등 핵심 업무프로세스

- SOC Report를 통해 이용자기업과 이용자기업의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일원화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 개별 이용자 기업의 내부 통제의 직접적인 운영/평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 외부감사인은 외부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감사인이 수행한 테스트 결과와 보고서를 의존하여 효율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 모회사의 연결 결산 프로세스 중 IT 의존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IT 통제 테스트가 수행되고 있는가?
- 모회사는 부문의 프로세스에 대한 IT 의존 항목 또는 그룹차원의 GSI를 고려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 외부서비스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조직에 대한 통제활동을 적절하게 검토하고 있거나 필요 시 SOC Report를 제공받고 있는가? 경영진은 SOC Report의 인증대상에 대한 재무보고 프로세스 대응 여부, 식별된 통제에 대한 설계 및 운영의 유효성, 추가적으로 식별해야 하는 통제활동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가?

18)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III. 부정의 발생원인과 자금통제 미비사례

1. 부정의 발생원인

- 미국의 유명한 범죄학자인 Donald R. Cressey가 제시한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 이론은 부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부정은 기회, 동기/압력, 합리화의 3가지 요소가 모두 결합하였을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Fraud Triangle]



- 따라서 이 세 요소의 취약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특히 동기/압력과 합리화보다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부정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부정의 주요 발생 원인



- ACFE(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국제부정조사인협회)에 따르면¹⁹⁾ 부정 발생의 주요 원인은 취약한 내부통제, 경영진 검토 부족, 감독인력의 부족이라는 답변이 51%, 18%, 9%로 나왔다.
 - 전세계의 공인부정조사관(CFE)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조사한 부정사건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정의 원인은 내부통제의 부재(32%)였으며 그 다음은 기존 내부통제의 무력화(19%)로 사례의 절반 이상이 내부 통제의 불충분함으로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부정사건의 상당수가 취약한 내부통제, 경영진 검토 부족, 감독인력의 부족에서 발생하므로 부정사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와 감독이 필수적임.

19) OCCUPATIONAL FRAUD 2024: A REPORT TO THE NATIONS, ACFE

2. 사례를 통한 자금 프로세스 통제 미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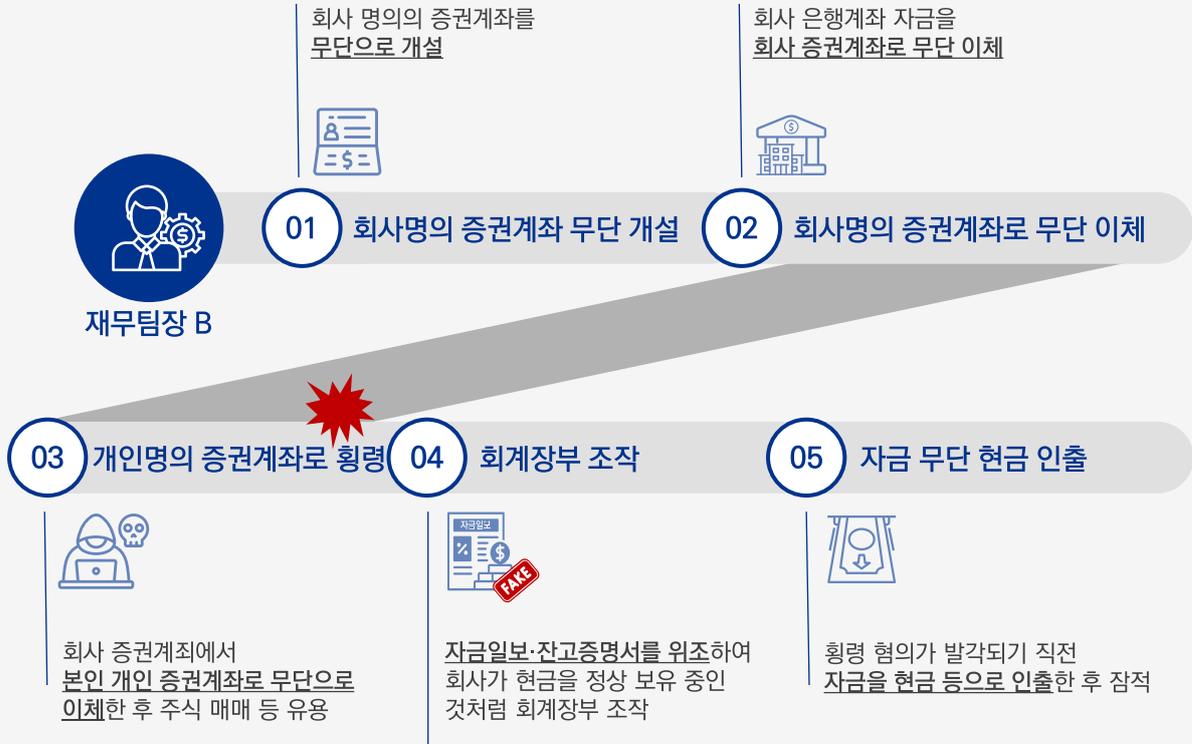
- 자금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감리사례²⁰⁾를 활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금 통제 관련 미비점과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한다.



승인절차 미비	업무분리·교체 無	점검 부실
<p>상급자 승인없이 이체계좌 및 전표 입력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팀 직원이 승인 없이 임의의 계좌번호를 이체계좌로 등록 및 수정 가능 재무팀 팀원들은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기안한 전표를 회사장부에 입력(posting)할 수 있는 권한 보유 	<p>업무분장 미비, 1인이 장기간 자금업무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팀 과장은 자금과 회계업무를 모두 수행하면서 전표관리 등 권한도 부여받아 관련된 증빙을 손쉽게 조작 혼자서 자금관리업무를 장기간 전담하여 계좌관리 및 회계처리 미비점을 쉽게 파악 	<p>자금 모니터링 미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장부상 예금 잔액과 은행 실제잔고의 일치 여부를 매일 대사하여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 절차 미수행

20)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2024.05.24, 금융감독원

CASE 2



승인절차 미비



**상급자 승인 및 전표처리 없이
인터넷뱅킹 이체·출금 가능**

- 공인인증서, OTP를 보관자 분리 없이 재무팀장이 동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
- 신규계좌개설 시 상급자 승인절차가 없고, 개설된 계좌를 ERP, 펌뱅킹 시스템에 등록하는 통제절차도 부재

업무분리·교체 無



업무분장 미비

-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표관리 등 회계업무 권한도 부여받아 직접 회계기록을 조작
- 회사는 B팀장이 과거 자금관리 내규를 위반하였음에도 내부징계 처분만 하고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음

점검 부실



적절한 자금 모니터링 부재

- 회사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사용시 신청서 또는 근거서류 등의 확인절차가 부재
- 승인권자가 자금일보를 형식적으로만 결재하고 잔액을 전산자료(은행 펌뱅킹 화면)와 대사하는 절차 누락

CASE 3



경리팀 부장 C

01

차입신청서 반출



예비용으로 보관 중인 차입신청서(사용인감을 날인한 상태)를 무단으로 반출

02

무역금융차입 결재 없이 실행



결재 없이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차입을 실행

03

개인 계좌 횡령



회사 차입으로 유입된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

04

임의 전표 입력



결산 전 회사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 현금부족액은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여 횡령사실 은폐

05

정보 허위 작성



임원이 예금현황 점검(월별) 시 입출금내역 및 잔액을 통장 실물 등과 비교하지 않았던 점을 악용하여 예금현황에 계좌별 잔액 및 입·출금내역을 허위로 작성

승인절차 미비



상급자 승인 및 전표처리 없이 인터넷뱅킹 이체·출금 가능

-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기안한 전표를 회사장부에 입력(posting)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인터넷뱅킹 승인절차가 없고 용도·이체한도 미확인

업무분리·교체 無



업무분장 미비

- 인터넷뱅킹용 OTP 및 공인인증서 사용권한을 분리하지 않아 C부장이 OTP·공인인증서를 통해 차입현금을 본인계좌로 통제절차 없이 송금
-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임명하고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내부감사 기능이 부재

점검 부실



실질적 자금 모니터링 부재

- 재무담당이사·대표이사는 월별로 입출금내역 및 잔액 등 예금현황을 점검하고 있었지만 통장 실물 등 증빙이 아닌 형식적인 숫자만 확인하는데 그쳐 횡령 적발에 실패

3. 자금사고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01 이해 상충 소지자의 업무분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양립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 여부 확인
(‘회계’ VS ‘자금’, ‘구매’ VS 회계, ‘자금이체 실행’ VS ‘승인’, ‘자금집행’ VS ‘전표승인’ 등)
- IT 권한과 연계한 업무분장 여부



02 거래처 정보에 대한 등록 또는 승인권한이 적절히 분리되어 있는가?

-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
- 단독으로 거래처 마스터 정보에 접근하여 계좌 정보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권한을 분리



03 중요한 자금통제에 대해서 상급자의 검토와 승인이 수행되고 있는가?

- 상급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전표입력이나 이체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 점검 포인트와 명확한 기준의 수립 여부



04 일별, 월별 및 연중 자금거래에 대한 대사 및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자금일보나 자금월보에 대한 잔액과 회계장부상 잔액과 은행기록과의 정기적인 대사업무
- 결산시점별 회계상 장부금액과 계좌 조회 내역과의 대사업무



05 법인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등의 사용에 대해 적절한 승인절차가 구비되어 있는가?

-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 실물에 대한 관리 및 관리대장의 사용 등 적절한 통제 절차 구비
- OTP, 공동인증서의 분리보관으로 자금집행 시 모니터링 절차 수행



IV. 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1. 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의 주요 내용

-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이하 新 평가·보고기준)을 제정하여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서식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 →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감사(위원회) → 이사회]
1)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2)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내역 3) 자금위험 부정에 대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이하 자금 통제 공시 서식) 등 추가	1)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내역 2) 자금관련 부정 위험 관련 외부감사인과의 소통내역 등 추가 3) 평가보고서의 수신인을 이사회로 한정

2024년 1월 1일부터 新 평가·보고기준을 시행하되, 실무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2025년부터는 의무 적용) 또한 新 평가·보고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대상회사에 모두 적용²¹⁾

1)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 상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

-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 내 자금 통제 공시 서식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 예시]

-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²²⁾

구분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	실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전사적 수준 통제	부정 방지 제도 운영 등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자금 통제	계좌 등록/변경, 법인인감, OTP 사용통제 등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기타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검토 등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Illustrative

21) 자금 통제 공시 서식의 경우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대상과 시기가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구분	내부회계감사대상회사	내부회계검토대상회사
상장회사	자산 1천억 원 이상 (2025년 적용)	자산 1천억 원 미만 (2026년 적용)
비상장회사	N/A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 기타 대형 비상장회사 (2026년 적용) 금융회사 (2025년 적용)

22) 관련 공시 예시 상세는 별첨 참고

2)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감사(위원회)는 新 평가·보고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평가보고서 서식에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新 평가·보고기준의 감사(위원회) 평가항목 신설²³⁾]

가. 평가기간의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신설항목

나. 회사의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작성·공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운영되는지 평가

다.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라.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의 적정성 확인

마.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확인

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 감사(위원회)의 평가 항목으로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Management override)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의 유효성 평가가 신설되었으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위해 다음의 요소들을 예시로 고려할 수 있다.
 - 윤리강령의 제정 및 준수여부 조사에 대한 사항
 - 업무 분장에 대한 사항 (IT 통제 상의 접근권한과 업무 분장 포함)
 - 내부고발자 제도에 부정사고(자산의 유용·횡령 등)외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를 지시하는 것도 포함하여 공시·운영하는지 여부와 부당한 지시 거부에 불이익한 대우 금지 및 보호조치 여부
 - 발견되거나 제보된 내부고발사항에서 고발자 보호조치와 부정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경영진 또는 회사 내 적합한 임직원에게 통제무력화 위험 가능성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
 -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Journal Entry), 회계추정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에서 작동하는 내부통제의 유효성, 만약 미비점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한 개선조치 등

[新 평가·보고기준에서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에 추가되는 의사소통 내역 공시 예시]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및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

구분	일자	참석자	주요 논의내용
경영진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등)	20XX.XX.XX	내부회계관리자 등	~~~~~
외부감사인	20XX.XX.XX	외부감사인 등	~~~~~

Illustrative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를 위해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및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내역을 공시하는 것도 감사(위원회)의 감독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감사(위원회)가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자에 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대면 협의만을 수행하였다면, CEO 또는 CFO 등 주요 경영진과의 의사소통까지 확장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 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3절 26

2. 강화된 자금통제 공시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01 경영진은 전사적 수준에서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고려하여 공시하고 있는가?

- 부정방지 프로그램/부정위험 평가/업무 분장/상시 모니터링 등 기업 전체 수준에서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경영진이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



02 경영진은 자금 관련 부정위험과 직결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통제 활동을 충분히 공시하고 있는가?

- 중요하고 핵심적인 통제 활동 판단 시 다음과 같은 기준²⁴⁾을 참고
 -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통제인가?
 -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이 명확히 식별되는가?
 -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는 경우,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의 발생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03 경영진은 통제활동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는가?

- 경영진이 통제별로 통제 수행자, 통제 속성(대사검토, 승인 등), 통제평가자와 평가 시기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검토



04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은 적절한 시정조치와 미비점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보고하고 있는가?

- 미비점 자체 뿐 아니라 시정조치와 그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 또한 중요



05 경영진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와 동일하게 자금관련 부정위험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충분히 공시하고 있는가?

-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 대상은 운영실태보고서의 일부이므로 연결 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과 범위가 일치해야 함
 - 예를 들어²⁵⁾ 특정 프로세스만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범위로 선정하였고 해당 프로세스가 자금부정 통제 공시 서식 대상 통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자회사에 자금 부정 관련 통제가 존재하더라도 제외 가능



24)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 관련 FAQ, 2024.11.04, 금융감독원

25) 2024년도 K-IFRS 제개정 설명회 자료, 2024.12.05, 금융감독원

V. 별첨

1.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의 작성 사례

-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평가결과를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다²⁶⁾.

[일반 사례(개별·별도 기준)]

구분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전사적 수준 통제	〈부정 방지 제도 운영〉 경영진은 횡령 사고 등의 부정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자제도(익명제보채널) 및 부정 방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 프로그램 준수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전임직원에게 전자 공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X1.10월 'X2.1월)
	〈부정위험 평가〉 경영진은 업무 프로세스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부정위험에 대한 식별 및 평가를 최신화하고 이를 통제에 적절히 반영함. 과거 부정 사고 발생 건 존재 시 해당 사항을 고려함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X1.10월 'X2.1월)
	〈업무분장 현황 관리〉 경영진은 거래수준 통제활동의 설계(신규 및 변경)시 내부회계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분장 및 접근권한(제한)을 고려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조직은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통제의 업무분장 설계가 최신화되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함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X1.10월 'X2.1월)
	〈모니터링〉 경영진은 발생빈도가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높거나 특정거래처로 집중되거나 동일한 항목으로 다수 거래처에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이상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검토하는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함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X1.10월 'X2.1월)

26)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의 공시 서식' 예시 개정본 및 참고자료 (작성 사례, FAQ), 2024.11.4. 금융감독원

[일반 사례(개별·별도 기준), 계속]

구분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자금통제 (입출금 계좌관리, 입출금 관리, 자금 조달 등)	<p>〈계좌 등록/변경〉 자금팀장은 계좌등록 및 변경 시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XX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XX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계좌 현황 관리〉 자금팀장은 ERP 상 등록된 회사 명의 계좌에 대해 용도, 해지 여부 등 현황 검토 후 승인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XX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XX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내부회계팀, 외부전문가 활용, 'X1.7월, 'X1.10월, 'X2.1월)</p>
	<p>〈계좌 완전성 검토〉 자금팀장은 ERP상 미등록된 회사명의 계좌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회사 명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수 조회하여 계좌의 완전성을 검토하고 승인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통제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그 자체로는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하지 않으나, XX통제의 미비점과 결합하여 중요한 취약점으로 평가하였음. XX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인감 사용통제〉 총무팀장은 법인·사용인감의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고 날인목적 및 요청부서 승인 기간 검토 후, 사용대장 상 관련 사항 기재 및 서명 후 날인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자금 집행 제한, 펌뱅킹〉 ERP 상 Vendor Master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이체가 불가하도록 설정되어 있음</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자금 집행 검토〉 자금팀장은 일일 지급결의 계획서와 지급결의 요청서 간의 일치 여부 및 구매요청서 등의 근거 서류상 주요 내역(지급처 식별자, 계좌)간 일치 여부를 검토 후 승인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자금 집행 전표 승인 업무분장〉 자금 전표 기표자와 승인자는 분리되어 있으며, 자금 집행 승인권자와 자금 전표 최종승인권자가 분리되어 있음</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일일자금 입출금내역 관리〉 자금팀장은 ERP 혹은 일일 자금 마감보고서 상 잔액과 입출금 내역이 은행조회내역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며, 차이 존재 시 소명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승인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자금 조달 검토〉 자금팀장은 차입 및 사채발행 품의서 상 주요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경우 이사회에 상정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채권·채무조정 검토〉 자금팀장은 채권·채무 관련 조정사항(Debit/Credit notes)에 대하여 영업관리팀·구매팀이 승인한 근거 문서 내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 후 승인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Vendor Master 생성·변경 검토〉 회계팀장은 Vendor Master 생성·변경 요청서 상 주요 정보(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가 근거 문서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승인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일반 사례(개별·별도 기준), 계속]

구분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기타 업무 수준 통제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검토> 회계팀장은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요청서 상 주요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가 근거 문서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승인함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실사를 통한 재고수량 확정> 회계팀장은 재고실사결과 보고서를 수령하여 적격 승인 및 실사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실사수량과 실사 전 ERP상 수량 간의 차이사유 적정성을 검토 후 ERP상 차이조정에 대해 승인함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판매 재고 출고 제한> 시스템상 판매 재고 출고는 거래처 마스터 등록 거래처로만 이루어짐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외부전문가 활용, 'X1.7월, 'X1.10월 'X2.1월)

[일반 사례(연결 기준)]

구분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	대상 회사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자금통제 (입출금 계좌관리, 입출금 관리 등)	<자금 집행 검토> 자금팀장은 일일 지급결의 계획서와 지급결의 요청서 간의 일치 여부 및 구매요청서 등의 근거 서류상 주요 내역(지급처 식별자, 계좌)간 일치 여부를 검토 후 승인함	A사, B사 외 4개사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A사 내부회계팀, B사 외 4개사 총무팀, 'X1.7월, 'X1.10월, 'X2.1월 등)
	<자금 집행 전표 승인 업무분장> 자금 전표 기표자와 승인자는 분리되어 있으며, 자금 집행 승인권자와 자금 전표 최종승인권자가 분리되어 있음	A사, B사 외 4개사	테스트 수행 결과, XX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XX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A사 내부회계팀, B사 외 4개사 총무팀, 'X1.7월, 'X1.10월, 'X2.1월 등)
	<일일자금 입출금내역 관리> 자금팀장은 ERP 혹은 일일 자금 마감보고서 상 잔액과 입출금 내역이 은행조회내역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며, 차이 존재 시 소명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승인함	A사, B사, C사 외 3개사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A사 내부회계팀, B사 외 3개사 총무팀, C사 총무팀, 외부전문가 활용, 'X1.7월, 'X1.10월, 'X2.1월 등)

[금융업 사례(은행)]

구분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전사적 수준 통제	<p>〈순환근무·강제명령휴가〉 유인과 압력으로 인한 부정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를 제한하며, 명령휴가제도 등 부정 감소를 위한 상시 절차를 운영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내부고발제도〉 경영진은 익명으로 내부고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발유형별로 보상기준을 다양화하고, 내규 상 특정 상황에 대한 고발 및 고발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와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사고예방대책〉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지점 및 본점부서 사고예방대책 마련을 수행하며 대책 관련 직무 및 직급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직무분리〉 경영진은 고위험 거래 범위를 구체화하여 직무분리 대상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최신화함. 또한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상시감시〉 경영진은 중요 이상지표에 대한 보고 및 처리,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감시를 수행하며, 감시 대상에는 지점과 본점이 모두 포함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자점감사〉 경영진은 자점감사제도를 시행하며 감사결과는 본사 감사팀에 보고됨. 감사 결과 발견된 부실징후 영업점에 대하여 현장점검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자금통제 (입출금 계좌관리, 입출금관리, 자금 조달, 수표 및 어음 관리 등)	<p>〈여신실행 업무분장〉 영업점 여신실행 업무는 담당자와 책임자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짐</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여신 실행 시스템 제한〉 여신의 시스템상 실행은 승인된 건으로 제한되며, 승인 관련 중요 항목 및 필수 조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스템상 실행이 제한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여신 송금 제한〉 대출 시 전산상 수취인명은 수신 계좌입력 시 종속변수로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사전에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송금이 이루어짐</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영업점 출납합계표 마감 승인〉 영업점 출납책임자 및 금고책임자는 출납담당자가 출납 시제 실물과 시스템 등록내역을 대사하여 마감 후 작성한 출납합계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 후 승인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일일 거래건 대사 확인〉 자금팀장은 일별 거래 건에 대해 거래내역, 결제요청서, 시스템상 결제금액을 대사하여 차이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자금인출 거래 승인〉 자금인출 거래 시 자금부 인출담당팀장은 인출요청부서로부터 수령한 인출요청서 및 인출 선행조건 충족 확인 공문을 시스템 내 거래입력 내용과 대사 확인한 내역에 대해 승인 후 인출을 실행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p>〈인출대금 지급 승인〉 자금부 등의 지급 책임자는 대금 지급 또는 결제와 관련하여 증빙서류 등 근거 문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후 지급 거래 전 사전 승인함</p>	<p>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p>

[금융업 사례(은행), 계속]

구분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자금통제 (입출금 계좌관리, 입출금관리, 자금 조달, 수표 및 어음 관리 등)	<BOK-Wire 자금결제 권한 분리> BOK-Wire 자금 결제 시 사용자, 책임자, 사용자 관리자, OTP 관리자가 각각 구분 관리됨. 접근가능 ID, PW, OTP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OTP 관리자의 OTP 사용을 통해서만 자금 이체가 가능함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지준예치금 잔액 대사 확인> 자금결제 담당자는 BOK-WIRE 상 지준예치금 잔액과 시스템 상 잔액 간 대사 확인하고 승인함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기타 업무 수준 통제	<파생상품 거래 승인> 파생상품 거래 담당자는 파생상품 거래 시 시스템상 거래 입력내역과 거래 상대방과의 근거문서를 대사하며, 파생상품 거래 담당팀장은 해당 대사내역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후 승인함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파생상품 기표 확정 권한 분리> 파생상품 거래, 결제, 결산 관련 기표 확정 권한은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내규상 정의된 담당자만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대출서류 관리> 자금인출 요청서는 은행 공용 메일로만 수신되고, 전자문서로 등록이 이루어짐. 자금팀장은 이에 대해 일 마감 시 사후 확인을 수행하고 문서화함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유가증권 거래 입력 및 실행 권한 분리> 유가증권 거래 입력 권한 및 실행 권한은 분리되어 있음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유가증권 거래 승인> 유가증권 담당자는 유가증권 거래 시 판매사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거래 관련 근거문서와 출금·입금 내역을 대사하고 일치여부를 확인 후 거래를 수행하며, 유가증권 담당팀장은 일 마감 시 증빙 간 대사 적정성을 점검하고 승인함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2. 경영진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공시 상세 예시

- 금융감독원은 新 평가·보고기준가이드라인에서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공시 상세 예시를 제시했다.
 - 이를 통해 회사 및 감사(위원회)의 공시 서식을 파악하고 감독당국에서 규정한 공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예시
가. 비상장 중소기업 외 1)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 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나. 비상장 중소기업	다. 비상장 중소기업 외 1)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 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라. 비상장 중소기업

[가. 1) 비상장 중소기업 외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xx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단,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적용한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단, 동 기준 '제4호 다목의 완화된 방식'을 적용한 경우, '제4호 다목의 완화된 방식'을 적용함을 명시)'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습니다.

(불 임)

-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

20××년 × 월 × 일
 대 표 이 사 × × × (인)
 내부회계관리자 × × × (인)

[가. 1) 비상장 중소기업 외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계속]

(붙임)

-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붙임 서식

구분*1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1*2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3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전사적 수준 통제	(예) <부정 방지 제도 운영> 경영진은 횡령 사고 등의 부정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자제도(익명제보채널), 부정 방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 프로그램 준수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정기적으로 전 임직원에게 전사 공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	(예)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자금통제 (입출금 계좌관리, 입출금 관리, 수표관리, 법인카드관리 등)	(예) <계좌 등록/변경> 자금팀장은 계좌등록 및 변경 시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함	(예)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예) <법인인감, OTP 사용통제> 감사팀에 의해 법인인감, OTP의 물리적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감사팀장의 사용대상 상 날인·사용 목적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날인·사용이 허용됨	(예)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기타 업무 수준 통제	(예)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검토> 회계팀장은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요청서 상 주요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가 근거 문서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승인함	(예)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1.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22.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서 제시한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기 위한 통제와 그 항목 구분을 예시로 참고하되, 회사의 규모 등 상황에 따라 회사의 통제활동을 적절하게 기재 및 구분할 수 있다.

*2.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데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통제(다만, 자금통제는 직접 관련된 핵심통제에 한함)를 기술하되, 그 외 업무수준 통제 중 회사가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핵심통제를 포함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때, 통제기술서의 통제활동을 통한·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상황에 따라 통제기술서의 통제활동 내용을 그대로 기술할 수도 있다. 다만, 통제수행자와 통제항목은 명시적으로 기술한다.

*3. 설계 및 운영 평가 수행한 결과를 표기하되, 수행팀, 수행 시기,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포함한다.

[가. 1) 비상장 중소기업 외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계속]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붙임 서식

구 분*1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1*2	대상 회사*3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4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전사적 수준 통제	(예) <부정 방지 제도 운영> 경영진은 횡령 사고 등의 부정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자제도(익명제보채널), 부정 방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 프로그램 준수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정기적으로 전 임직원에게 전사 공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	(예) A사, B사 외 4개 사	(예)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A사 XX팀, B사 외 4개사 YY팀, 'X1.7월, 'X1.10월, 'X2.1월 등)
자금통제 (입출금 계좌관리, 입출금 관리, 수표관리, 법인카드관리 등)	(예) <법인인감, OTP 사용통제> 감사팀에 의해 법인인감, OTP의 물리적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감사팀장의 사용대상 상 날인·사용 목적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날인·사용이 허용됨	(예) A사, B사 외 4개 사	(예) 테스트 수행 결과, XX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XX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A사 XX팀, B사 외 4개사 YY팀, 'X1.7월, 'X1.10월, 'X2.1월 등)
기타 업무 수준 통제	(예)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검토> 회계팀장은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요청서 상 주요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가 근거 문서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승인함	(예) A사, C사 외 3개 사	(예)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A사 XX팀, C사 외 3개사 YY팀, 'X1.7월, 'X1.10월, 'X2.1월 등)

*1.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22.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서 제시한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기 위한 통제와 그 항목 구분을 예시로 참고하되, 회사의 규모 등 상황에 따라 회사의 통제활동을 적절하게 기재 및 구분할 수 있다.

*2.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데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통제(다만, 자금통제는 직접 관련된 핵심통제에 한함)를 기술하되, 그 외 업무수준 통제 중 회사가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핵심통제를 포함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때, 통제기술서의 통제활동을 통합·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상황에 따라 통제기술서의 통제활동 내용을 그대로 기술할 수도 있다. 다만, 통제수행자와 통제항목은 명시적으로 기술한다.

*3. 작성 및 공시 범위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전체와 같으며, 각 통제를 설계 및 운영한 회사를 기재한다(다만, 대상 회사가 3개 이상인 경우, ●●●, ●● 외 ●개사로 기재 가능).

*4. 설계 및 운영 평가 수행한 결과를 표기하되, 수행팀, 수행 시기,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포함한다.

[가. 2) 비상장 중소기업 외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xx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단,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적용한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동 기준 '제4호 다목의 완화된 방식'을 적용한 경우, '제4호 다목의 완화된 방식'을 적용함을 명시)'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x×년 x월 x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취약점의 내용〉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포함)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검토하였습니다.

(붙임)

-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상세평가내용
 - 중요한 취약점을 발생시킨 통제 미비점의 원인을 이해하고 각각의 중요한 취약점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 중요한 취약점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내용 등을 포함
-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 횡령 등 자금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

20x×년 x 월 x 일
대 표 이 사 x x x (인)
내부회계관리자 x x x (인)

[가. 2) 비상장 중소기업 외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계속]

(붙임)

-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상세평가내용
-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붙임 서식

구분*1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1*2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3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전사적 수준 통제	(예) <부정 방지 제도 운영> 경영진은 횡령 사고 등의 부정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자제도(익명정보채널), 부정 방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 프로그램 준수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정기적으로 전 임직원에게 전사 공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	(예)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자금통제 (입출금 계좌관리, 입출금 관리, 수표관리, 법인카드관리 등)	(예) <계좌 등록/변경> 자금팀장은 계좌등록 및 변경 시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함	(예)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예) <법인인감, OTP 사용통제> 감사팀에 의해 법인인감, OTP의 물리적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감사팀장의 사용대상 상 날인·사용 목적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날인·사용이 허용됨	(예)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기타 업무 수준 통제	(예)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검토> 회계팀장은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요청서 상 주요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가 근거 문서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승인함	(예)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1.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22.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서 제시한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기 위한 통제와 그 항목 구분을 예시로 참고하되, 회사의 규모 등 상황에 따라 회사의 통제활동을 적절하게 기재 및 구분할 수 있다.

*2.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데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통제(다만, 자금통제는 직접 관련된 핵심통제에 한함)를 기술하되, 그 외 업무수준 통제 중 회사가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핵심통제를 포함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때, 통제기술서의 통제활동을 통한·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상황에 따라 통제기술서의 통제활동 내용을 그대로 기술할 수도 있다. 다만, 통제수행자와 통제항목은 명시적으로 기술한다.

*3. 설계 및 운영 평가 수행한 결과를 표기하되, 수행팀, 수행 시기,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포함한다.

[가. 2) 비상장 중소기업 외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계속]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붙임 서식

구분*1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1*2	대상 회사*3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4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전사적 수준 통제	(예) <부정 방지 제도 운영> 경영진은 횡령 사고 등의 부정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자제도(익명제보채널), 부정 방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 프로그램 준수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정기적으로 전 임직원에게 전사 공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	(예) A사, B사 외 4개 사	(예)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A사 XX팀, B사 외 4개사 YY팀, 'X1.7월, 'X1.10월, 'X2.1월 등)
자금통제 (입출금 계좌관리, 입출금 관리, 수표관리, 법인카드관리 등)	(예) <법인인감, OTP 사용통제> 감사팀에 의해 법인인감, OTP의 물리적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감사팀장의 사용대상 상 날인·사용 목적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날인·사용이 허용됨	(예) A사, B사 외 4개 사	(예) 테스트 수행 결과, XX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XX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A사 XX팀, B사 외 4개사 YY팀, 'X1.7월, 'X1.10월, 'X2.1월 등)
기타 업무 수준 통제	(예)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검토> 회계팀장은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요청서 상 주요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가 근거 문서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승인함	(예) A사, C사 외 3개 사	(예)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A사 XX팀, C사 외 3개사 YY팀, 'X1.7월, 'X1.10월, 'X2.1월 등)

- *1.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22.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서 제시한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기 위한 통제와 그 항목 구분을 예시로 참고하되, 회사의 규모 등 상황에 따라 회사의 통제활동을 적절하게 기재 및 구분할 수 있다.
- *2.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데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통제(다만, 자금통제는 직접 관련된 핵심통제에 한함)를 기술하되, 그 외 업무수준 통제 중 회사가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핵심통제를 포함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때, 통제기술서의 통제활동을 통합·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상황에 따라 통제기술서의 통제활동 내용을 그대로 기술할 수도 있다. 다만, 통제수행자와 통제항목은 명시적으로 기술한다.
- *3. 작성 및 공시 범위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전체와 같으며, 각 통제를 설계 및 운영한 회사를 기재한다(다만, 대상 회사가 3개 이상인 경우, ●●●, ●● 외 ●개사로 기재 가능).
- *4. 설계 및 운영 평가 수행한 결과를 표기하되, 수행팀, 수행 시기,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포함한다.

[나. 비상장 중소기업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 × 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각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미준수 사항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각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준수 여부	예	아니오	비고
•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의 준수			
•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의 준수			
•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의 준수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의 준수			
•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의 준수			
• 대표이사 등의 운영실태 보고 기준 및 절차의 준수			
•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 기준 및 절차의 준수			
•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의 준수			
•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또는 회계 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에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 하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의 준수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준수			
• 법 제22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조사·시정 등의 요구 및 조사결과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의 준수			
• 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과 관련한 회사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의 준수			
•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 비고란에는 예외사항 또는 미준수의 사유를 기재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점검 결과의 시정 조치 이행 결과를 기재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 검토하였습니다.

20××년 × 월 × 일
 대 표 이 사 × × × (인)
 내부회계관리자 × × × (인)

[다. 1) 비상장 중소기업 외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예시]

× × 주식회사 이사회 귀중

본 감사(위원회)는 20××년 ×월 ×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단,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적용한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 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단, 동 기준 ‘제4호 다목의 완화된 방식’을 적용한 경우, ‘제4호 다목의 완화된 방식’을 적용함을 명시)’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 임)

- 권고사항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및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

구 분	일자	참석자	주요 논의내용*
경영진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등)			
외부감사인			

* 이전연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시정계획의 이행결과 검토, 자금관련 부정위험 통제를 위한 회사의 통제활동에 대한 평가, 경영진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내역 차이 등

20××년 × 월 × 일
(감사 설치 회사) 감사 × × × (인)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 × (인)

[다. 2) 비상장 중소기업 외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예시]

× × 주식회사 이사회 귀중

본 감사(위원회)는 20××년 ×월 ×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단,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적용한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 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단, 동 기준 ‘제4호 다목의 완화된 방식’을 적용한 경우, ‘제4호 다목의 완화된 방식’을 적용함을 명시)’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취약점 및 시정조치 계획>

(불 임)

- 운영실태보고서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 요약
- 권고사항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및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

구분	일자	참석자	주요 논의내용*
경영진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등)			
외부감사인			

*이전연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시정계획의 이행결과 검토, 자금관련 부정위험 통제를 위한 회사의 통제활동에 대한 평가, 경영진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내역 차이 등

20××년 ×월 ×일
 (감사 설치 회사) 감사 × × × (인)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 × (인)

[라. 비상장 중소기업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예시]

× × 주식회사 이사회 귀중

본 감사(위원회)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각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미준수 사항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각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준수 여부	예	아니오	비고
•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의 준수			
•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의 준수			
•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의 준수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의 준수			
•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의 준수			
• 대표이사 등의 운영실태 보고 기준 및 절차의 준수			
•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 기준 및 절차의 준수			
•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의 준수			
•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또는 회계 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에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 하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의 준수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준수			
• 법 제22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조사·시정 등의 요구 및 조사결과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의 준수			
• 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과 관련한 회사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의 준수			
•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라. 비상장 중소기업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예시,계속]

※ 비고란에는 예외사항 또는 미준수의 사유를 기재하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 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20××년 × 월 × 일

(감사 설치 회사) 감사 × × × (인)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 × (인)

Contact us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변영훈

감사부문 대표
T. 02-2112-0506
E. ybyun@kr.kpmg.com

심정훈

상무 (ACI 부리더)
T. 02-2112-0338
E. jshim@kr.kpmg.com

노유경

책임연구원
T. 02-2112-7883
E. youkyunglo@kr.kpmg.com

김다슬

선임연구원
T. 02-2112-3305
E. daseulkim@kr.kpmg.com

김민규

부대표(ACI 리더)
T. 02-2112-0428
E. mingyukim@kr.kpmg.com

이민형

이사
T. 02-2112-7854
E. minhyunglee@kr.kpmg.com

민경석

책임연구원
T. 02-2112-4292
E. kyeongseokmin@kr.kpmg.com

박수진

선임연구원
T. 02-2112-7728
E. spark153@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